

인권운동가 서준식을 석방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이며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선생은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구중서, 김상근, 김승훈, 김종배, 이든명, 이창복

전화: 741-2407 팩스: 741-2406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녹색교통운동, 독립영화협의회, 문화정책연대기획단,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조직위원회, 제주 4·3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진보통신연대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2001,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인권하루소식> 1천호가 나오는 밤을 여기(대공분실)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양심수에 관한 치졸한 논쟁이 있는 후 연행된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잡혀온 것은 오히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11. 5일 가족 면회에서)

“서준식씨를 아십니까”

<씨네21> 121호 ‘편집장이 독자에게’ 中

그는 일본패전 3년 뒤인 48년 교토에서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났다. ...고교를 졸업한 청년은 한·일 수교 3년 뒤인 68년 식민지의 기억과 증오의 감정이 아직 성성하던 서울로 유학온다. 71년 이른바 유학생간첩단사건이 대선정국을 공안회오리로 몰고갔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이 교포유학생은 대학원생이던 형과 함께 구속된다. 78년 그가 징역 7년의 형량을 마쳤을 때, 3년 전 ‘사회안전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생겨나 있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방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딱히 지은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 법은 막 서른살이 된 그를 청주보안감호소로 보냈고, 그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독방의 겨울을 책없이 지내야 하는 고통’을 맞보았고 옥바라지하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망전보를 받아야 했다. 그 1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사회안전법의 위헌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일이었고, 법정싸움이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을 때 결행한 51일간의 단식이었다. 사회안전법은 88년 5월 25일 마흔번째 생일을 맞은 이 장기수를 한 친척집으로 주거를 제한한다는 꼬리표를 붙여 석방한다.

서준식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권영화제를 준비했다. 올해도 그는 무수한 상영관을 두드렸고 어렵사리 대관을 허락받은 장소들도 관의 협박과 간섭 때문에 번번이 막판에 퇴짜를 맞곤 했다. 인권영화를 질시하는 심의제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상영을 원천봉쇄당하는 공연법, 그 이윤배반의 협공장치를 아예 거부한 인권영화제는 심지어 인권단체 강당이나 대학 강의실, 딱딱한 의자들이 놓인 그 불편하고 좁은 공간조차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아무도 서준식 씨의 70-80년대를 거론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고, 또 문민정치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준식씨의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제도를 혼자 몸으로 맞서는 방식이고 가끔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20년전과 지금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유신정권은 서준식이라는 인간을 투옥시켰고, 90년대 문민정부는 서준식의 영화를 투옥시킨 것이다.

서준식 씨 구속이 부당한 6가지 이유

1. <레드헌트>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두 차례나 공개상영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측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영화를 만든 제작 당사자조차도 아무런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상영하면 관창고 인권영화제가 상영하면 불법이라는 당국의 잣대는 아무런 설득력도 형평성도 없는 이중 잣대일 뿐입니다. 또한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인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최근 사회과학서적을 판매한 이유로 대학가 서점주인들이 대거 구속되었을 때, 똑같은 책을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서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정권의 편의에 따라 표적을 정해놓고 적용되는 희대의 악법입니다.

2. '사전심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음비법은 그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공연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심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는 합법적인 공연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에 공연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인권영화제에게 공연허가를 내줄리는 만무했습니다.

4. 인권영화제 상영장소인 홍익대측엔 안기부, 경찰, 교육부, 문체부 등의 압력이 행사됐습니다. 부당한 압력에 맞서는 것은 인권영화제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5. 인권영화제는 무료영화제입니다. 따라서 영화제 개최를 위한 제반비용은 시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문화되다시피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인권영화제에 적용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6. 보안관찰대상자는 자신이 만난 사람, 재산상황, 여행지 등 자신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함 합니다.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감시·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인권적 법률입니다. 이 법도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인권악법 철폐하라!
인권운동가 서준식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하라!
표현의 자유 짓밟는 사전심의 철폐하라!

“양심수는 있다”

▶ 서준식 씨가 구속된 시기는 정부가 “양심수는 단한명도 없다”고 떠들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서 씨 구속 직후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심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한 국민이 있다면 멀리 볼 것없이 서준식을 보라.”

▶ 민가협에 따르면, 국내에는 서준식 씨 외에도 무려 9백명의 양심수가 있습니다.

올 인권주간은 <레드헌트>와 함께

▶ 지난 11월 13일 31개 사회·시민가 결성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당국에 항의하는 동시에, 문제가 됐던 <레드헌트>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묻기 위해 <레드헌트> 전국동시상영을 추진합니다.

- 교회, 사찰, 학교, 생산현장, 사무실 등 어느곳이든 관계없습니다.
- 가능하면 인권주간(12. 8-14)에 맞춰 집중적인 상영을 바랍니다.
- 상영과 함께 토론을 조직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제주 4.3에 관한 강연을 요청하면, 공대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서명작업과 아울러 설문조사 작업도 병행해 주십시오.
- 테이프는 보급가 2만원에 공급합니다.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연락은 인권운동사랑방 내 공대위(02-741-2407)로 하시고 상영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한겨레신문 등 매체를 통해 상영 일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